

#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

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(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)에 따라 「서울시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2023년 아동영향평가 용역」에 대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.

2023년 6월 13일

## 서울특별시

1. 용역명 : 서울시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2023년 아동영향평가 용역

2. 용역내용

- 아동관련 정책사업 및 자치법규 분석·평가를 통한 개선 권고사항 마련

3. 사 유

본 용역은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2(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)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,

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의3 제1항 제2호의 가목의 예외사유(학술, 연구, 조사, 검사, 평가,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)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

4. 문의사항

본 공표에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아동담당관(☎02-2133-5166, 이단희 주무관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